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기관이 위반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정조사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급여비용 부정청구·부정수급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제출 명령 등에 불응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20.3.31.공포, 2020.10.1.시행)됨에 따라 부당청구 가담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제한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업무정지 등의 경우 수급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노인학대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당청구 가담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제한 기준(안 제22조의2 및 별표4)

- 1) 부당청구 가담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제한기간 1개월은 30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당가담금액은 기관이 부정하게 지급받은 공단부담금 중 수급자가 가담한 금액으로 함

- 2)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제한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가담금액별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기간을 7개 구간으로 나누어 정함
- 3)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급여 제한분을 12회로 나누어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에서 매달 감액할 수 있도록 함

나.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안 제23조 및 별표1)

- 1) 법률의 위임조항의 위치가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에 장기요양기관의 종류가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시행규칙 상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기준 조항에도 반영
- 2)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구(舊)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삭제하고 ‘구(舊) 재가장기요양기관’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규정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다.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의 경우 수급자 보호조치 규정(안 제28조제1항)

제36조의 위임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폐업·휴업 또는 지정을 갱신하지 않으려는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다른 복지·의료서비스 연계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수급자 조치계획서에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지정취소 시 수급자 보호조치 (안 제29조의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즉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용 가능한 주변의 장기요양 기관 현황 등을 제공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공단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규정 개선(안 제29조의4 및 별표2)

- 1) 성적 학대를 제외한 학대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시 장기요양수급자와 보호자에게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9조의4 및 별표2)
- 2) 장기요양기관의 노인학대 행위가 중대한 위반행위인 경우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1종의 학대행위라도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학대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2)
- 3)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을 기존 3차 위반에서 2차 위반으로 변경함(안 별표2)

바. 조사 거부·방해 기관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보류 절차(안 제31조의3)

- 1)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단에 통지하도록 함
- 2)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려는 경우 지급보류대상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지급보류의 원인, 의견제출 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미리 통보하도록 함

- 3) 지급보류대상이 된 장기요양기관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 4)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견서 검토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장기요양기관이 조사·검사 등에 다시 응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조사·검사 등이 종료된 경우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함
- 5) 공단은 조사·검사 등이 완료된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보류된 급여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 급여비용 지급보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사. 기타 서식 정비(안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상위법·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이의신청→심사청구, 장애등급→장애 정도)을 반영하고 지정갱신 절차 관련 서식을 마련하며,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기준 등)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2항”을 “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을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 1”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장기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 지정”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은”을 “장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변경사항 신고서”를 “변경신고서”로 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

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업, 휴업 또는 지정을 갱신하지 않으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장기요양 외 다른 복지서비스나 병원 연계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휴업일 또는 폐업일”을 “휴업일, 폐업일,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를 각각 제29조의4 및 제29조의5로 하고,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수급자 권익보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즉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내용을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는 조치
2. 수급자에게 이용 가능한 주변 장기요양기관 목록과 현황, 평가결과 등을 제공하여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이때, 자료 제공을 위하여 공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공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4(종전의 제29조의3)제1항 중 “각 목”을 “나목”으로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 질문 또는 검사(이하 ‘조사·검사 등’이라고 한다)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기관의 명칭·기관기호·주소, 장기요양기관장(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지급보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지급보류의 대상이 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법적근거
3. 지급보류 해제 가능 사유와 해제 시점
4. 지급보류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그 밖에 지급 보류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보류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

류에 대한 의견 등을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 종료 후에 법 제61조제2항의 조사·검사 등에 다시 응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조사·검사 등에 다시 응하여 해당 조사·검사 등이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조사·검사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보류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5항에 따른 조사·검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보류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등에 필요한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통지할 의견서 서식과 의견이 제출된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장기요양심판위원회”를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로 한

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위반행위가 단일하나 중대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정상
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호에 따른 개별기준
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 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라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 표 외의
부분 중 “1차 및 2차”를 “1차”로 하며, 같은 목 2) 중 “3차”를 “2차”로 한
다.

2)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1호 중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하고, 같은 호 중 ”
장애의 종류 및 등급“을 ”장애의 종류 및 정도“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
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2조의2
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행정처분의 기준 (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37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2) 둘 이상의 위반행위(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 3)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하고,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가 단일하나 중대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호에 따른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 할 수 있다.

- 1)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 2) 처분할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13)가)부터 마)까지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 3) 삭제 <2019. 6. 12.>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 2)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3) 삭제 <2019. 6. 12.>

2. 개별기준

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3)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취소
4)법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2	지정취소			
5)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6)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2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7)법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3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8)법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4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9)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5	지정취소			
10)법 제36조의2에 따른 지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가)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아니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6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다)가)또는 나)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11)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7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12)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3)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법 제37조제1항제6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 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4)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 7호	지정취소			
15)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른 사업자 등록 또 는 「소득세법」 제168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 우	법 제37조제1항제 8호	지정취소			

나.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1) 1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단위 : 일)

구분	부당청구액의 비율				
월평균 부당금액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10	20	30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10	20	30	40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10	20	30	40	50
8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20	30	40	50	60
240만원 이상 840만원 미만	30	40	50	60	70
84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40	50	60	70	80
3천만원 이상	50	60	70	80	90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총 부당금액/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X 100으로 산출한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공단이 심사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을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 2) 2차 위반 시의 기준: 지정취소

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 제37조의5제1항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6개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12개월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기준 (제22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부담가담금액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중 수급자가 가담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한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공단이 수급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한분을 12회로 나누어 1년간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에서 매달 감액할 수 있다. (예시: 수급자가 가담한 부담금액이 900만원인 경우, 6개월간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된다. 다만 공단이 수급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6개월간의 월 한도액을 12회로 나누어 1년간의 수급자의 월 한도액의 1/2 감액분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2.

개별기준

부담가담금액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기간
150만원 미만	15일간 중지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개월간 중지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2개월간 중지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개월간 중지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4개월간 중지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5개월간 중지
1,0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6개월간 중지
1,2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7개월간 중지
1,500만원 이상 1,800만원 미만	8개월간 중지
1,800만원 이상 2,100만원 미만	9개월간 중지
2,100만원 이상	10개월간 중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① 수급자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② 계약 당사자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계약자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계 약 일			
	급여개시일					계약기간 ~			
③ 급여 계약 내용	급여 종류		이용시간	급여 비용	횟수/월	금액/월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		
	월	일					성명	자격/면허번호	수급자와의 관계
		~	~						
		~	~						
	합계		(원)						
④ 복지용구 계약 내용	품목명	제품명	복지용구 표준코드	급여방식 구입 대여		판매일 또는 대여기간		금액	
	합계		(원)						
⑤ 비 급 여 계약 내용	항목	기간	단가/일	개수(또는 횟수)/월		금액			
	합계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방법

- ① 수급자: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를 적습니다.
- ② 계약당사자
-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를 적습니다.
 - 계약자의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계약일: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습니다.
 - 급여개시일: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최초로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급여지급을 시작한 날짜를 적습니다.
 - 계약기간: 급여종류별 전체 계약기간(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 ③ 급여계약내용
- 급여종류: 수급자와 계약이 체결된 급여를 종류별로 작성합니다.
 - 월: 전체 계약기간 중 서비스 제공월을 적습니다.
 - 일: 해당 월의 서비스 제공일을 적습니다. 서비스 이용시간과 서비스제공 요양보호사(간호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한 줄에 기록합니다.
 - 이용시간: 서비스 제공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24시간 단위로 적습니다(예 : 18:00 ~ 20:00).
 - 급여비용: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방문당 또는 시간당, 1일당 등 해당하는 급여비용으로 적습니다.
 - 횟수/월: 해당 급여비용의 월 제공횟수를 적습니다.
 - 금액/월: 급여비용별 월 횟수에 대한 총 급여비용을 적습니다.
 -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의 성명과 자격/면허번호를 적습니다. 2명이 방문한 경우에는 2명을 모두 적습니다 ("수급자와의 관계"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수급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수급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수급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그 관계를 적습니다).
 - 합계: 계약기간 내 월별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 ④ 복지용품 계약내용
- 품목명, 제품명: 「복지용품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품목명과 제품명을 적습니다.
 - 복지용품표준코드: 제공 제품의 복지용품 바코드표를 확인하여 제품코드 및 제조번호를 포함한 복지용품표준코드를 적습니다.
 - 급여방식: 해당 제품의 구입 또는 대여 여부에 따라 √표를 합니다.
 - 판매일 또는 대여기간: 구입인 경우 판매일을 적고, 대여인 경우 대여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 금액: 제품별로 구입인 경우 판매일에 판매한 제품의 급여비용을 적고, 대여인 경우 대여기간에 해당하는 총 급여비용을 적습니다.
 - 합계: 제품별 총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 ⑤ 비급여 계약내용
-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적습니다.
 - 기간: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제공기간을 적습니다.
 - 단가/일: 해당 비급여 항목의 일일 단가를 적습니다.
(예시: 1식 당 식재료비가 1,500원이고 1일 3식일 경우, 단가는 4,500원으로 작성)
 - 개수 또는 횟수/월: 비급여 항목별 개수 또는 횟수를 적습니다.
 - 금액, 합계: 항목별 총 금액과 총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⑥유의사항

1. 급여종류별로 각각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작성합니다.
2. 같은 월에 다른 급여비용의 동일한 급여를 이용할 경우 “③급여계약내용”에서 줄을 바꿔서 작성하며,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장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지정 비갱신)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적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장기요양 기관의 장 (대표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④ 장기요양기관명		⑤ 장기요양기관 기호		⑥ 전화번호			
⑦ 법인등록번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폐업일 /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휴업기간		폐업일 /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⑩ 폐업·지정 비갱신 ·휴업사유							
⑪ 연락처 (폐업· 지정 유효기간 만료·휴업 후)		성명:		전화번호:			
		주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1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 또는 지정 비갱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1부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①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④ ~ ⑥: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⑦: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⑧: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⑨: 폐업하려는 날짜 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휴업하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 ⑩: 기관의 폐업 또는 지정 유효기간 비갱신 또는 휴업사유를 적습니다.
- ⑪: 폐업 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 또는 휴업 이후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제출	→	접 수, 검 토 및 처리
--------	---	---------------

신청인

- 21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 []자체보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① 장기요양 기관 (신청인)	기관기호 대표자성명 폐업일(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기관명 전화번호 휴업기간
-----------------------	-----------------------------------	---------------------

② 자체보관 계획

보관기간	
보관장소	
보관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

단위 : 명, 권, 매, 개

구분	공단이관/자체보관 ()명()권()매, 분실 및 훼손 ()명()권()매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1.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2.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3. 방문간호지시서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분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 별지 제34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호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분에 갈음합니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인계·인수

구분	인계자	인수자	비고
성명	(인)	(인)	
전화번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2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 []자체보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1부 2.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분실 및 훼손 목록표 1부 3.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수수료 없음
------	--	-----------

※ 공단은 이관자료 중 일부 훼손 또는 일부 분실로 인하여 자료의 정상적인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 외에 별도의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폐업기관의 이관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작성 방법 및 유의 사항

<작성방법>

○ 신청구분 : 해당 신청구분에 “√” 표시를 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 신청서: 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지정 유효기간 비갱신 또는 휴업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를 공단이관 신청하려는 경우
-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자체보관 신청서: 장기요양기관이 휴업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를 자체보관하려는 경우

○ 항목별 작성요령

① 장기요양기관의 기본사항을 적습니다.

- 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의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 기관명: 장기요양기관의 기관명을 적습니다.
- 대표자 성명: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전화번호: 장기요양기관의 전화번호 또는 연락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폐업일(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폐업일을, 지정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을 적습니다.
- 휴업기간: 장기요양기관이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②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의 자체보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보관기간: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에 대한 보관기간을 적습니다.
- 보관장소: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보관할 장소(주소)를 적습니다.
- 보관책임자: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에 대한 보관 책임자(장기요양기관장)를 적습니다.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의 공단이관(휴업·폐업·지정 비갱신) 또는 자체보관(휴업) 신청을 할 자료의 목록 및 수량을 적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 구분에 따른 발생연도별 이관(보관) 수량을 적습니다.

④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의 공단이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인계자: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에 대한 인계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인수자: 공단 관할지사에서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의 공단이관 신청을 하는 경우 이관자료 수량이 “③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의 기재 사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 “③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의 “2.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이란 제27조제4항제3호와 관련된 서류 일체로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관할 지사	➔	이관자료 확인 관할 지사	➔	결 재 관할 지사	➔	접수증 교부 관할 지사
---------------	---	--------------	---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영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당해</u>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현황	4. <u>해당</u>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22조의2(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기준 등)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기준은 별표4와 같다.</u>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생략)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31조제2항에 따라</u>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u>법 제31조제1항</u> ----- ----- -----.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u>재가노인복지시설</u> : 같은	1. <u>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8</u>

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3. 법률 제15881호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간주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25조(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① (생략)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로 -----

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로 -----

3.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장기요양기관
지정 -----

-----.

제25조(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장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

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2. (생략)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28조(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갱신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

1. 2. (현행과 같음)

③ -----

변경신고서-----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 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

-----.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업, 휴업 또는 지정을 갱신하지

제28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등) ①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존기간 중인 제27조제4항 각호의 자료(제2호의 자료는 제외한다)를 휴업일 또는 폐업일까지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분실 및 훼손 목록표와 함께 공단에 이관해야 한다.

②·③ (생략)

<신 설>

않으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장기요양 외 다른 복지서비스나 병원 연계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등) ① -----

----- 휴업일, 폐업일,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수급자 권익보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제29조의3(과징금의 부과·납부 등) ①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7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② (생략)

제29조의4 (생략)

<신설>

처분이 확정된 즉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내용을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는 조치
 2. 수급자에게 이용 가능한 주변 장기요양기관 목록과 현황, 평가결과 등을 제공하여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이 때, 자료 제공을 위하여 공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공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4(과징금의 부과·납부 등) ① -----

 -- 나목-----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의5 (현행 제29조의4와 같음)

제31조의3(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 질문 또는 검사(이하 ‘조사·검사 등’이라고 한다)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기관의 명칭·기관
기호·주소, 장기요양기관장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의 성명
2. 지급보류 원인이 되는 사실
과 지급보류의 대상이 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법적인
거
3. 지급보류 해제 가능 사유와
해제 시점
4. 지급보류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
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그 밖에 지급 보류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보류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에 대한 의견 등을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 종료 후에 법 제61조제2항의 조사·검사 등에 다시 응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제40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등) ①
(생략)
② 장기요양심판위원회가 제1
항에 따라 재심사청구서를 받으
면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61조제2
항에 따른 조사 · 검사 등에 다
시 응하여 해당 조사 · 검사 등
이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조사 ·
검사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
당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
급보류 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5항에
따른 조사 · 검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보류 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에 필요한 해당 장
기요양기관에 통지할 의견서 서
식과 의견이 제출된 경우의 처
리방법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본을 공단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 공단은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에 답변서와 관계 서류를 장기
 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